

# 2023년도 (재)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22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3월 22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### 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(재)금천미래장학회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바,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출연대상 : (재)금천미래장학회
- 출연내용 : 금천미래장학회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출연금 지원
  - ※ 출연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확대·활성화
- 출연금 : 1,000,000천원(10억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(재)금천미래장학회 출연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- (재)금천미래장학회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미래형 장학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2027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출자·출연은 해당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, 예산액은 추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, 본 동의안은 출연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사항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발굴·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출연에는 법령의 저촉됨이 없어 적법하나,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도록 향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